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세부내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_____ 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단기보호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 ① 단기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단기보호급여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료 납부의무
 2. 단기보호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기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단기보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의 제공
 6. ‘갑’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단기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 (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면회 및 외출·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외출 및 외박은 ‘갑’의 건강을 고려하여 24시간 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출 및 외박시 동행자가 ‘병’이 아닐 경우 ‘을’은 ‘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④ ‘병’은 외출 및 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④ 계약자 본인 이외의 가족은 퇴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퇴소할 시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요양원은 퇴소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가족들이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가족 및 친족에게 지운다.

제10조(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이용료는 입소 당일에 [선]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기간 연장시, 연장 개시일까지 선납부 한다.
- ②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직접수납 한다.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국민은행	205501-04-162555	에이플러스 물댄동산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단기보호 급여 수가 : (1일/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급여	1일 이용료	70,500	65,280	60,310	58,720	57,110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 10,000원/일		2인실 : 8,000원/일		
	식재료비(1식)	1일: 10,500원 (1식: 3,500원)				
	간식비(1회)	1회: 1,500원				
	기저귀 등	겔: 800원/개, 속: 250원/개, 언더웨어: 800원/개, 매트: 500원/개				
	개인진료비/간호처치비/약재비 등	청구 금액에 따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4년도 / 9월 기준]

등급별	구분	감경(6%)	감경(9%)	본인부담(15%)
1등급 1일: 70,500	이 용 료	38,070	57,105	95,175
	식비포함	146,070	165,105	203,175
2등급 1일: 65,280	이 용 료	35,251	52,877	88,128
	식비포함	143,251	160,877	196,128
3등급 1일: 60,310	이 용 료	32,567	48,851	81,419
	식비포함	140,567	156,851	189,419
4등급 1일: 58,720	이 용 료	31,709	47,563	79,272
	식비포함	139,709	155,563	187,272
5등급 1일: 57,110	이 용 료	30,839	46,259	77,099
	식비포함	138,839	154,259	185,099

식비 12,000원/일 (급식 3,500원 3회 / 간식 1,500원)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별도부담항목	개인별 병원진료비 및 약값, 기호식품
별도 부담 및 세부 내용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 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 및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2. 이 / 미용비: 수급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단) 정기적으로 시설 종사자 및, 자원 봉사자에 의해 제공되어 지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기타 ▪ 원거리 외출 , 병원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수단이용비용 ▪ 기저귀 및 개인위생 매트 등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제11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개인물품)

- ① ‘갑’ 은 단기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 이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을’ 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 과 협의 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관리)

- ① ‘을’ 은 ‘갑’ (또는 ‘병’)이 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4조(건강관리)

- ① ‘을’ 은 ‘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병’ 에게 이를 통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단기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을’은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식사 및 간식)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갑’(또는 ‘병’)의 동의를 얻어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 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18조(침실의 배정) ‘갑’의 침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갑’(또는 ‘병’)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을’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배상책임)

- ① ‘을’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은 ‘을’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2조(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 (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단, 미 희망 시 시설에서 원본만 보관 한다.)

특약 :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금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